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41 발의연월일: 2021. 7. 16.

발 의 자 : 인재근·김홍걸·김정호

조오섭 · 소병훈 · 이장섭

서영석 · 최종유 · 서영교

오영훈 · 서동용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·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·장기적·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 정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체 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기능"을 "기능, 지정의 기준·기간·절차"로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~	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
	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
	는 민간기관·단체 등을 제1항
	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	로 지정할 수 있다.
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	<u>⑤</u>
운영 및 <u>기능</u> , 육아종합지원센	<u>기능, 지정의 기준·</u>
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	<u>기간•절차</u>
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	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
⑤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